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8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박홍배·정진욱·민병덕

이광희 · 염태영 · 김재원

김정호 · 문진석 · 조승래

서미화 • 전용기 • 박정현

홍기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커짐.

현행 탄소중립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양한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의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구성 방식은 기후 위기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각화하고 포괄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함.

이에 위원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각 부처에서 NDC 감축량 산출에 사용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가 NDC 감축량 산출에 활용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에"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반영될 수 있도록"을 "반영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제2호의"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이상
-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 5.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6.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4		
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			
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	<u>제공하여야</u>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4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한다</u> .	<u>하며,</u>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u>자 3명 이상</u>		
<u><신 설></u>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		

<신 설>

<신 설>

<신 설>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⑦ (생 략)
- 8 <u>제4항제2호의</u>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생 략)

제17조(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규모의	총연합	단체가	추천하
는 자 3	명 이싱	-	

- 5.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6.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 하는 자 2명 이상
-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⑥·⑦ (현행과 같음)
- ⑧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 ⑨ (현행과 같음)
- 제1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